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자료 제공

환경부는 국정과제인 폐기물의 수집·운반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및 악취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하고,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 등을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발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편집자 주 -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 신고를 통해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안 제66조제6항)

소규모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과 농촌에서 발생하는 농업용 폐플라스틱 필름·시트류, 폐농약 포장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함

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밀폐형 차량으로 개선(안 별표 5 및 안 별표 7)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비산·유출 및 악취발생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도시 미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매립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민원 발생을 야기

2)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형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개선하고자 함

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 개정(안 별표 5의2)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성오니를 가공하여 화력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재활용 대상과 재활용 방법을 확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의2가목 중 “왕겨 또는 쌀겨”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로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에 한한다)
- 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6 제6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에 한한다)
-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

별표 5 제1호 중 나목과 다목을 각각 다목과 라목으로 하고,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 1. 생활폐기물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이나 탱크로리형 밀폐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폐가전제품·폐가구류 등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하여야 하는 경우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2호가목 중 2)와 3)을 각각 3)과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이나 탱크로리형 밀폐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3호나목 중 4)를 5)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가) 고상의 폐기물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이나 탱크로리형 밀폐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 그대로 운반하여야 하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다.

- 나)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 그대로 운반하여야 하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4호가목1) 중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를 “수집·운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지정폐기물은 다음의 차량을 이용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 가) 고상의 폐기물은 밀폐형 압축·압착차량이나 탱크로리형 밀폐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 그대로 운반하여야 하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다.

- 나) 액상의 폐기물은 탱크로리로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원형 그대로 운반하여야 하거나 밀폐된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다.

별표 5 제4호다목2)사) 중 (2)를 삭제한다.

별표 5 제5호마목1)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태반”으로 한다.



포장과 법률

별표 5의2 제2호다목4)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왕겨 또는 쌀겨”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왕겨 또는 쌀겨”를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등”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분진·광재”를 “폐산·폐알카리·오니·광재·분진·폐촉매·폐흡수제·폐흡착제·폐사진필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를 “원료로 제공하거나, 오니·분진이 배출되는 공정과 같은 용도의 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분진·광재를 용융·추출 등”을 “폐산·폐알카리·오니·광재·분진·폐촉매·폐흡수제·폐흡착제·폐사진필름을 분쇄·용해·용융·반응·추출 등”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하거나 수처리제로 제조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수처리제의”를 “수처리제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수처리제로 사용하는 폐산·폐알카리는”을 “폐산·폐알카리를 수처리제로 재활용(폐산·폐알카리로 제조한 수처리제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로 한다.

별표 5의2 제2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를 다음”을 “유기성오니 또는 왕겨 등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왕겨를 생물학적 처리방법”을 “왕겨 등을 발효 등 생물학적 방법이나 건조·분쇄 등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목 하단 중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를 “유기성 오니 또는 왕겨 등”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29호나목 중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쌀겨”를 “음식물류 폐기물, 동·식물성 잔재물, 쌀겨 등”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31호나목2)가)부터 나)까지 외의 부분 중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폴리염화비닐(PVC)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목2)가) 중 “폐고무 및 폐플라스틱”을 “폐합성고분자화합물”로 “정제연료유”를 “제31호의2나목에 따른 정제연료유”로 한다.

별표 5의2 제31호나목3)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3)가)(1)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로 한다.

3)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오니(지정폐기물이거나 분뇨 또는 가축분뇨 등의 생물학적 처리공정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오니류는 제외한다)를 가공하여 연료를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별표 5의2 제3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를 “바닥재(이하 “바닥재”라 한다) 또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적토(赤土, 수산화알루미늄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폐기물을 말한다)”로 하고, “원료 또는”을 “원료로 재활용하거나 바닥재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바닥재”를 “바닥재 또는 적토”로 한다.

별표 5의2 제40호에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폐지로 종이·재생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거나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으로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라 폐유 등을 담았던 용기 등을 제거하고 다음의 이물질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동 기준에 충족되는 폐지나 고철을 사용하는 종이·금속 등의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폐기물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폐지를 종이·재생판지 또는 포장용 완충재 등을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가) 종이 제조용으로 사용: 무게기준으로 3퍼센트 이하

나) 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무게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

2) 고철을 금속 또는 금속제품으로 제조하는 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무게기준으로 2퍼센트 이하

3) 이물질 함량 검사방법은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시험방법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여야 한다.

별표 7 제1호가목1) 중 가)와 나)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1)다)를 삭제한다.

가) 밀폐식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에는 2대) 이상

나)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5제곱미터 이상)

별표 7 제1호나목1)의 가)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1대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2대 이상

별표 7 제1호다목1)의 가)와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액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1대 이상,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9톤 이상)

나) 고체상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 3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13.5톤 이상)

별표 7 제2호가목1)나)(5) 중 “수집·운반차량”을 “수집·운반차량(밀폐형 압축·압착차량, 탱크로리, 탱크로리형 밀폐차량 또는 컨테이너형 밀폐차량을 말한다. 이 표에서는 이하 같다)”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장비요건 중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권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하거나 차량의 일부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영업대상 폐기물 및 운반방법 등을 고려하여 허가받은 전용차량 수량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한 차량의 종류 중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밀폐식 압축·압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갖추게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별표 17 비고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폐기물을 수집·운반 차량은 별표 5에 따른 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기준에 적합한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표 7 및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자가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개정된 규정에 적합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으로 본다. 다만, 수집·운반 차량의 증차로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변경허가 신청,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수집·운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별표 5 제6호다목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적합한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개정된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에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하거나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에 적합한 차량을 갖추어야 한다. [KO]

신·구조문 대비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영 제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처리) _____ _____ _____.
1. (생 략) 1의2. 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	1. (현행과 같음) 1의2. _____ _____
가. 동·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 음식물류 폐기물, 왕겨 또는 쌀겨를 자신의 농경지 퇴비나 자신의 가축 먹이로	가. _____ 왕겨, 쌀겨 또는 초목류 _____

현행	개정안
<p>사용</p> <p>나. (생략)</p> <p>2. ~ 11. (생략)</p> <p>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법 제14조제3항에서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②·③ (생략)</p> <p>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⑤ (생략)</p> <p>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신설〉</p>	<p>나. (현행과 같음)</p> <p>2. ~ 11. (현행과 같음)</p> <p>제15조의2(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발생하는 폐원단 조각에 한한다)</p> <p>5.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66조(폐기물처리 신고대상) ①~⑤ (현행과 같음)</p> <p>⑥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에 한한다)</p> <p>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p>